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3
----------	------

발의연월일 : 2013. 11. .

발 의 자 : 최용덕 의원

## 1. 제안이유

- 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인과 구직의 수요와 공급이 알맞게 순환 되어야 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일을 하여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함
- 나. 이를 위해 기업체 등은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함
- 다. 따라서 시장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근거리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근거리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② (생략) <u>&lt;신설&gt;</u>	제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근거리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관계법령 발취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고용정책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li> <li>○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li> <li>○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 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

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

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 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 상 비용발생 요인 없음.

## 4. 작성자

경제수도추진본부 일자리정책과장 전무수